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 주식회사, [] 유한·유한책임회사, [] 합자·합명회사 [] 개인 [] 협동조합	
	주소	(전화번호:)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주생산품목 (G2B)	물품분류번호	한글품명	
사업개시일	여성대표자 취임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 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상법」상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